

# 2021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3차 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 공정 개선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『제3차 안전 투자 혁신사업』 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5월 26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 1. 사업개요

-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## 2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### 신청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-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이전(‘09.9.30.까지)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\*을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(‘20.12.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)
  -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이전(‘09.6.30.까지)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 작업대\*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(‘20.12.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)

\*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, ①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, ②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·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봄에 직접 부착된 차량(재활용 처리 크레인), ③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

- ① 테일 리프트(tail lift), ②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, ③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, ④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소방장비, ⑤농업용 고소작업차(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)

\*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, ①테일 리프트(tail lift), ②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, ③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, ④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소방장비, ⑤농업용 고소작업차(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)

- ③ 승강로의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동력으로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권동식리프트를 유압식리프트로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
- ④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\* 중 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

\* 금형, 열처리, 용접기술부문은 제외

## 지원내용

- (이동식기계 교체)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▲이동식크레인 및 ▲고소작업대 교체 지원

지원 분야	지원 조건	보조지원금 한도	가격 산정
이동식크레인	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(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)	교체 비용의 50% (1억원 한도)	시장가격(위험기계+옵션)을 적용하여 산정
고소작업대			

- (지원 원칙) 교체하고자 하는 현재의 이동식기계와 동일한 종류 (용량 제한 없음)의 이동식기계로 교체지원. 다만, 고소작업용으로 사용(탑승설비 부착)하는 이동식크레인일 경우 차량총중량 기준 6.8톤 이내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

※ 현장평가 시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

- (자부담금 납부방식)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리스 또는 할부·론금융 중에서 선택

※ 공단 등록된 금융사 재정평가 결과 리스 또는 할부 불가시 지원 불가

- (신청 제한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\*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

\* 이동식크레인(2톤 이상), 고소작업대(전체)

- (설비공사)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▲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유해 위험공정에 대한 개선 및 ▲리프트 교체 지원
  - 뿌리공정개선은 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기술을 사용하여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기 위한 생산설비(부속설비 포함)개선 및 그에 따른 환경개선(전기, 환기, 방음 등 공사포함)

지원 분야	지원조건	보조지원금 한도	보조지원금 산정
뿌리공정개선	-	사업비의 50% (1억원 한도)	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정산 후 확정
리프트교체	폐기		표준단가에 따라 산정

※ 원가정산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

- (자부담금 납부방식)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리스, 할부·론금융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
- ※ 공단 등록된 금융사 재정평가 결과 리스 또는 할부 불가시 지원 불가

## □ 지원제외 사항

- 뿌리공정개선의 경우, 지원대상 뿌리기술(주조, 소성가공 및 표면처리 기술)을 사용하는 공정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계·기구\*
  - \* (예시) 절삭가공기계류(선반, 밀링머신, 드릴링머신, 보링머신, 기계톱, 연삭기 등), 사출성형기계, 용접기, 사상기 등
- 개선대상 공정과 전기적, 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(입식, 좌식)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·기구\*
  - 단, 방호장치 설치는 공정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
  - \* (예시) 핸드리프트, 적재대, 공구대(공구함), 작업대, 이동대차 등 단품 기계·기구류
- 공정개선 없이 작업장의 바닥, 조명 등 공정개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사
  - ※ 뿌리공정개선의 경우, 총사업비 3,000만원 미만은 지원불가

### 3. 선정절차 및 방법



### 4. 사업대상 선정방법

- ❖ 요건검토를 통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①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 
②대상선정평가결과 적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

- ① (우선지원대상 사업장 선정) 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방식을 적용하여 「우선지원대상」 사업장을 선정

【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방식】	
구분	우선순위 항목
이동식기계 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위험기계 제작 연식, 교체 범위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결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이동식크레인 등 위험기계 제작 연식</li><li>▶ 위험기계 소유기간 (장기 보유자 우선)</li></ul></li></ul>
설비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사업주 의지, 위험수준, 영세성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결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의 투자의지</li><li>▶ 사업장 규모(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)</li><li>▶ 공정 노후도 및 위험 공정 보유 수준</li></ul></li></ul>

- ② (대상선정 평가)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▲재정평가, ▲현장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

\* 재정평가 : 리스, 할부 등 금융지원 가능 여부

#### < 이동식기계 교체 적정성 현장 평가 >

- ▶ (방법) 전국 33개 안전검사장 안전검사 위탁기관 중 적정성 평가를 위탁하여 교체대상 이동식기계의 적정성 평가
- ▶ (항목) 사업신청시 제출한 교체대상 차량의 ▲차량등록원부 상 차대번호 일치 여부, ▲차량 소유자, ▲보유기간 및 ▲세금 체납여부 등 확인
- ※ 1차 사업모집(2월) 절차에 따라 현장평가결과 적정을 받았으나, 사업을 자진 취소한 사업장은 동일한 설비에 한하여 현장평가 생략

#### < 설비공사 적정성 현장평가 >

- ▶ (방법) 신청 사업장에 방문, 개선대상 공정 확인 및 CEO 면담 등을 통해 평가
- ▶ (항목) 개선에 따른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, 생산성 개선 정도, 사업 완수 가능성, 개발 일정의 타당성 등(100점 만점)

\* 전체 배점 중 60점 이상은 심사 상정, 60점 미만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, 2회 이상 60점 미만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등 반려 조치

## 5. 참여제한 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#### <참여 제한 사유>

- ▶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▶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- ▶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▶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
- ▶ '21년도에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결정을 받은 사업장

※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## 6. 신청기간 및 방법 등

### 신청기간

- '21. 5. 26.(수) 09:00 ~ 6. 16.(수) 18:00까지

### 신청방법

-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([anto.kosha.or.kr](http://anto.kosha.or.kr))에 회원가입 후 신청 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
### 제출서류

### <제출 신청서류>

<b>&lt;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 교체&gt;</b>	<b>&lt;뿌리공정개선, 리프트 교체&gt;</b>
<p>① 사업자등록증 1부(사본)</p> <p>② 산재완납증명원 1부(발행 후 3개월 이내, 사본)</p> <p>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(발행 후 3개월 이내, 사본)</p> <p>④ 개인정보 취합 및 제3자 정보제공 활용동의서(전자동의서 적용)</p> <p>⑤ 견적서 1부(공급업체 날인된 견적서 사본, 날인생략 불가)</p> <p>※ (교차신청의 경우) 이동식크레인을 고소작업대로 교차 신청할 경우, 도입차량의 차량총중량(6.8톤)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카탈로그(제원표 포함) 1부 추가 제출</p> <p>⑥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1부</p> <p>※ (기계장치 명판 훼손 시) 제조사 제작 증명확인서 추가 제출(자료실 참조)</p> <p>※ (지입차량의 경우) 차량등록원부상 현물 출자 위·수탁 차량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0조에 따른 위·수탁계약서 추가 제출</p> <p>⑦ 장비사진(전, 후, 옆면, 명판 등 포함)</p>	<p>① 사업자등록증 1부(사본)</p> <p>② 산재완납증명원 1부(발행 후 3개월 이내, 사본)</p> <p>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(발행 후 3개월 이내, 사본)</p> <p>④ 개인정보 취합 및 제3자 정보제공 활용동의서(전자동의서 적용)</p> <p>⑤ 견적서 1부(공급업체 날인된 견적서 사본, 날인생략 불가)</p> <p>⑥ 사업계획서(사진대장 포함) 1부</p>

### □ 문의처

- 안전투자 혁신사업 콜센터 1644-4555
-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([anto.kosha.or.kr](http://anto.kosha.or.kr)) Q&A 게시판

## 7. 기타 사항

- 상기 사업단계별 추진일정, 추진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'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1.27.)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망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지원을 위하여
  - ▲사업별 지원 조건 강화 및 ▲지원금액 비율 조정 등 안전투자 혁신사업 시행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금번 사업모집에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